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시민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측면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침 폐지
-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징수·절차 개선

2. 주요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3. 참고 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제3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과 대 료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 내에서 산정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구 미 시 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가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고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분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 료납부 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할 것